



동물검역소에서의 중요한 공지사항

2019년4월22일부터

해외로부터의 육제품 위법한 반입에 대한대응을 엄격화했습니다.



임의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위법한 반입에는
엄정히 대처합니다.

- ◆ 수하물 중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의 축산물이
확인된 경우 벌칙 대상이 됩니다.
- ◆ 수입검사 절차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므로
검사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제품 반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